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 2”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중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법 제245조의 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u>제9조의</u>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 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u>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 제 184조 및 법 제 5장</u>		
1~4(생략)		1~4(현행과 같음)		
5. <u>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u>		(삭 제)		
6~7(생략)		6~7(현행과 같음)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① <u>법 제 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u>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① <u>법 제 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u>		

현행	개정안
1~4(생략) ②(생략)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 2.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건설기계가 과세건설기계로 된 때 5. 과세건설기계가 비과세 건설기계로 된 때	1~4(생략) ②(생략)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28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생략) ② 법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장.....

현행	개정안
제3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248의 <u>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1일 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신신고 납부하여야 한다.</u> 제3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u>245조의 2의</u>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 하 여야 한다. 1~6 (생략)	(삭제) 제3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5장 1~6 (현행과 같음)